

이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

소관부서 : 청년아동과

제정 2025. 8. 8 규칙 제79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이천시청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에 따른 이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
2.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
3.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·회복적 보호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
4.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5.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6.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,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

- 가.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
- 나. 보건소 건강증진업무 담당 부서장
- 다.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
- 라. 이천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
- 마. 이천시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
- 바. 이천시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

2. 위촉직 위원

- 가. 이천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
- 나. 이천시 국공립병원 공공사업 또는 진료업무 담당 부서장 (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으로 대체 가능)
- 다. 이천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
- 라. 법률전문가
- 마. 학부모 대표
- 바.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, 가족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4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5. 그 밖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

대행한다.

제7조(심의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는 서면심의나 대리출석에 의한 심의가 불가하다. 다만,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비대면심의(영상, 서면)가 가능하다.

1. 안전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8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,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

2.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·평가 및 판정

3.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

4.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, 실무위원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.

-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,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⑦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센터의 사례 상담 직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⑧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관계 공무원,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회의록)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) 심의위원회, 실무위원회 및 제9조에 따라 출석 발언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비밀 준수의 의무)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 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.